

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06
----------	-----

2015년 7월 10일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5년 3월 30일, 김경자 의원(대표발의)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5년 6월 25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자치위원회 김경자 의원)

-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. 이에 따라,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체벌을 방지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, 시장이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태호)

가. 개요

- 이 개정조례안은,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,
 -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체벌을 방지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,
 - 이에 시장이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려는 것임.

〈신·구 대비표〉

현행	개정안
제2조(책 임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	제2조(책 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대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.

나.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,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영유아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.
- 이에 지난 4월 30일,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CCTV(폐쇄회로 텔레비전) 설치 의무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『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』이 통과(시행일 2015. 9. 19) 되었고,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.

〈『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』 주요 개정내용〉

-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 의무화
-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강화
-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시 인성함양 과목 추가
-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 배치
-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
-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

- 동 개정조례안은,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,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체벌을 방지 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,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려는 것인바,
 - 이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하는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,

아동학대 방지 및 영유아 권리보장을 위한 상기의 제도적 흐름과도 부합하고,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위해서는 아동인권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, 그 긍정적 의미가 있고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- 다만,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‘체벌’에 대한 용어는 현행 법령상 그 정의가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, 보육교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시장의 책무규정(제2조)에 두는 것 보다는 현행 조례 제20조의 ‘교육’ 규정안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입법체계상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바, 이의 내용이 수정·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0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5년 6월 25일
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‘체벌’ 이라는 용어는 법령상 그 정의가 없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이 용어를 삭제하여 자구수정하고, 동 내용은 현행 조례 규정과의 합치성을 고려하여, 제20조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(안 제20조 제2항 관련)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제1항 번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안 제20조의 제목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책임) 서울특별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	제2조(책임) ① (현행과 같음)	제2조(책임)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대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.	<삭제> (현행과 같음)
제20조(교육)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	(현행과 같음)	제20조(교육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	<신설>	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(교육)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	제20조(교육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	② <u>시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</u>